

제151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면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검토보고서 27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4면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7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3
------------	------

제출일자 : 2005.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직원 총 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현 정원 변동 없이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보강하고, 집행기관 정원 1,235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233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규정된 구 본청·보건소·동 및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 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2004.12.18)]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1,235명”을 “1,233명”으로, 동조제2호중 “24명”을 “26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집 행 기 관				구의회 사무국
		소 계	본 청	보건소	동	
총 계	1,259	1,233	998	73	162	26
정무직 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 계	870	856	636	58	162	14
3급	1	1	1			
4급	7	6	5	1		1
5급	51	49	24	6	19	2
6급	165	162	129	14	19	3
7급	252	248	175	20	53	4
8급	291	288	228	15	45	3
9급	103	102	74	2	26	1
별정직 계	14	8	8			6
6급상당	3	3	3			
7급상당	8	4	4			4
8급상당	2	1	1			1
9급상당	1					1
기능직 계	374	368	353	15		6
7급	16	16	16			
8급	43	43	41	2		
9급	96	94	92	2		2
10급	219	215	204	11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u>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u> ”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03조 및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 「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u> 」 ----- ----- -----.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9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35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4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 : <u>1,233명</u> 2. ----- : <u>26명</u>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규칙으로 정한다.</u>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u>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 ----- <u>별표와 같다.</u> <u>〈삭 제〉</u>
<u>〈신 설〉</u>	제4조(직렬별 정원) <u>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